

2025년 출판콘텐츠 기술개발 지원 사업(후속과제) 공고

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「2025년 출판콘텐츠 기술개발 지원」 사업(후속과제)을 추진하오니,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1. 사업 개요

- 사업명: 출판콘텐츠 기술개발 지원
- 사업목적: 출판산업분야 혁신 기술 과제 발굴 및 지원
- 사업기간: 2025년 1월~2026년 5월

2. 지원 개요

- 지원대상: 2019년~2024년 내 출판콘텐츠 기술개발 지원 사업 선정사 중 선정 과제 고도화 희망사
- 지원예산: 300백만 원(1개 과제당 최대 지원금 100백만 원 이내)
- 지원규모: 고도화 과제 3개 내외 지원
 - ※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
 - ※ 심사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지원규모 변경될 수 있음
 - ※ 사업 수행 포기 또는 선정 제외에 해당을 고려하여 차순위를 선정할 수 있음
- 지원조건
 - ① 신청 자격
 - e나라도움(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)을 사용해야 하며, 하기 **【선정 제외 대상】** 이 아니어야 함
 - 모든 과제는 2026. 3. 27.(금)까지 개발을 완료해야 함
 - ※ 협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고도화 완료 예정 과제는 지원 불가
 - ※ 개발 완료 불가 시 해당 선정사로부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으며, 향후 지원 사업 신청 불가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음
 - 신청사당 최대 1개까지 지원 가능
 - ※ 동일한 내용으로 신규과제 중복 신청 불가
 - 2019년~2024년 선정 당시 컨소시엄인 경우에만 컨소시엄 지원 가능

- 컨소시엄의 경우 1개 업체라도 문제 소지 시 신청 불가
- 과제책임자는 신청사 내부 인력만 가능하며 참여율 50% 이상 필수
- ※ 컨소시엄의 경우 참여기관 책임담당자도 동일 적용

② 사업비 편성 및 집행

- 진흥원이 지원하는 보조비목·보조세목만 허용 및 협약 기간 내의 사용분만 인정
- ※ 보조비목·보조세목 산정기준은 붙임 2 참조
- 신청액의 타당성, 고도화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·조정에 따라 지원금 확정
- ※ 신청액 감액은 가능하되, 증액은 불가
- 총사업비의 10% 이상을 신청사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하며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해야 함
- (예) 총사업비 100백만원 = 90백만원(국고보조금) + 10백만원(자부담금)
- 자부담금 전액 입금 확인 후 1차 보조금(70%) 지급하며 나머지 30%는 중간보고회 이후 2차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- 인건비는 총사업비의 70%를 초과할 수 없으며 대표자 및 임직원 친인척* 계상 불가
- * 민법 제777조(친족의 범위): 8촌 이내의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, 배우자
- 참여 인력의 참여율 100%(다른 기관 과제 참여율 + 진흥원 과제 참여율) 초과 불가
- 임직원(직계존비속을 포함), 배우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(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를 포함) 집행 불가
- 용역비(일반/연구)는 「국가계약법 시행령」 제26조에 의해 2천만 원 초과 시 수의계약 불가하며 조달청을 통한 계약 체결 및 집행
- 이외 공고, 협약서 및 국고보조금 운영 관리 지침 등 관련 규정·지침에 의거하여 편성 및 집행

【심사 및 선정 제외 대상】

- 「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」 제10조에 해당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
- 신청사가 국세, 지방세, 4대 보험료(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)의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
- 접수 마감일 현재 신청사의 장 및 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
- 접수 마감일 현재 신청사의 장 및 책임자가 동시에 수행하는 100백만 원을 초과하는 국고 지원 사업 과제가 3개 이상인 경우
- 접수 마감일 현재 신청사가 국고보조금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 사실이 있는 경우

- 접수 마감일 현재 신청사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
- 신청사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
- 동일한 사업계획으로(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) 진흥원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
- 신청사가 부도, 휴·폐업 상태인 경우
- 파산·회생절차·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(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 이행한 경우 예외)
- 대기업(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 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)인 경우
- 상기 지원 조건 및 제출 서류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
- 신청서 등 제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
- 신청서 등 제출 서류에 서명 또는 직인 날인이 없거나 희미하여 알아볼 수 없는 경우
- 내용이 미흡하거나 파일이 깨져 확인이 어려운 경우
- 기타 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명백한 선정 취소 사유로 판단될 경우

※ 최종 선정 후 선정 제외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·협약 해제 할 수 있음(컨소시엄 동일 적용)

【「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」 제10조(보조금 교부조건)】

- ① 주관부서의 장은 「보조금법」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.
1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반환 명령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사실
 - 가.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
 - 나.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
 - 다.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,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대한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
 - 라.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
 - 마.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을 받은 경우
 - 바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(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 경과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)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(다만,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,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)
 - 사.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선고를 받은 자(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)의 경우
 - 아. 바목부터 사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또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이거나 또는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일 때(다만,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,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)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

- 제 27조의 보조사업점검평가단에서 인정하는 경우
2.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
 - 가.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
 - 나.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
 - 다.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
 - 라.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
 3. 보조사업자는 「고용보험법」 및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납부 및 피보험자격 신고 등과 관련하여 법령상 의무를 지는 경우, 해당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사실
 4.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(프리랜서 등 포함)에 대해 성희롱·성폭력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
 - 가.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 및 제14조의2,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31조 및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성희롱·성폭력 방지 의무 이행 및 관련 서약서 제출
 - 나.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3조 및 제13조의2,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31조 및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 이행 및 이수 확인서 제출. 다만 1인 보조사업자이거나, 일회성 단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3. 신청 및 선정 개요

- 신청 기간: 7. 1.(화)~7. 17.(목) 16시까지 [17일간]
 - ※ 마감 시간 이후 신청 불가
-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 - ※ 세부 내용은 붙임 2 참조
 - 제출처: 담당자 이메일(ebookbaro6@kpipa.or.kr)
 - ※ 메일 제목명: (후속)[주관기관명, 참여기관명]과제명
 - 제출 서류: 아래 서류를 1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
 - 파일명: [주관기관명, 참여기관명]과제명.ZIP

제출 서류	형식	제출 방식
사업신청서 [필수]	PDF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신청서 하단 직인을 날인 후 PDF 1부 제출 * 파일명: 1. 사업신청서(주관기관명, 참여기관명).PDF
사업계획서 [필수]	PDF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계획서 1부 * 파일명: 2. 사업계획서(주관기관명, 참여기관명).PDF
별첨자료 [필수]	PDF 또는 JPG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폴더에 별첨 자료 번호 순으로 사본 각 1부씩 제출 * 폴더명: 3. 별첨자료(주관기관명, 참여기관명) * 각 파일명(형식 준수) 3-1. 신용평가등급확인서.PDF 3-2.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.PDF

	3-3. 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/이용/제공 동의서.PDF 3-4.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(개인)사업자등록증.PDF 또는 JPG 3-5. 참여인력 개별 이력서.PDF
--	---

○ 선정 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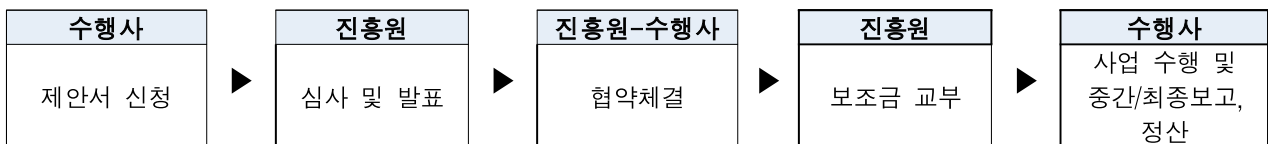
- 서면 심사: 심사 기준(안)을 바탕으로 진흥원 「공모지원사업 심사운영지침」에 따라 평가점수 고득점순(70점 이상)으로 선정

○ 심사 기준(안)

심사 기준		핵심사항									
수행사 역량 (컨소시엄 포함) (30)	(25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수행관리체계 마련 여부 및 적정성 참여인력의 확보 여부(정규/비정규/용역) 및 전문성 참여인력의 참여율 적정성 									
	(5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수행사의 재무건전성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신용평가등급</th> <th>배점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AAA, AA+, AA0, AA-, A+, A0, A-, BBB+, BBB0</td> <td>5</td> </tr> <tr> <td>BBB-, BB+, BB0, BB-</td> <td>4</td> </tr> <tr> <td>B+, B0, B-</td> <td>3</td> </tr> <tr> <td>CCC+ 이하</td> <td>2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컨소시엄의 경우 높은 기관의 등급으로 산정</p>	신용평가등급	배점	AAA, AA+, AA0, AA-, A+, A0, A-, BBB+, BBB0	5	BBB-, BB+, BB0, BB-	4	B+, B0, B-	3	CCC+ 이하
신용평가등급	배점										
AAA, AA+, AA0, AA-, A+, A0, A-, BBB+, BBB0	5										
BBB-, BB+, BB0, BB-	4										
B+, B0, B-	3										
CCC+ 이하	2										
과제 기획력 (30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원받은 연도 이후 성과, 매출액 등 진행 내용 고도화 내용의 실현가능성 및 구체적 실행 전략 고도화 필요성 및 효과성 									
기대성과 (20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과제 결과물의 경쟁력(발전 가능성) 및 공공성 기대되는 경제적 성과 및 사회적 파급효과 									
사업비 (20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실제 소요 사업비 계획의 구체성과 현실성 국고보조금 편성 내역의 적정성 									

4. 추진 절차 및 일정(안)

○ 추진 절차



○ 추진 일정(안) ※ 하기 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

사업 추진 내용	일정
공고 및 접수	7. 1.(화)~7. 17.(목) 16시까지 [17일간]
심사위원회 개최	8. 4.(월)~8. 14.(목)
선정 결과 공고	8. 26.(화)
협약 체결 및 보조금 1차 교부, 전문가 컨설팅 개최	9월~10월
중간보고서 제출 및 보조금 2차 교부	12월
최종보고서 제출, 성과교류회 개최, 정산	2026년 4월~5월

5. 유의사항 및 문의
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사업 공고, 협약서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사/선정사에게 있습니다.
- 본 사업은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동법 시행령, 기획재정부 「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」, 문화체육관광부 「국고보조금 운영 관리지침」,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「보조금관리지침」 등 보조금 관련 규정에 의해 수행되며 선정사는 관련 법령을 숙지 및 준수해야 합니다.
- 선정사는 진흥원과 협약을 위한 서류(성희롱·성폭력 방지 준수 등)를 진흥원에 제출한 후 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.
- 국고보조금은 협약 체결 후 70%, 중간보고서 등 실적 증빙 서류 제출 이후 30%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나, 과제 특성에 따라 조기 집행이 필요한 경우 조정될 수 있습니다.
- 선정사는 사업비 사용 적정성 검토 등을 위해 진흥원이 지정한 전문 회계 법인을 통해 검증받아야 하며, 진흥원은 선정사의 e나라도움 월별 사업비 집행을 상시 점검합니다.
- 진흥원은 완성도 높은 결과물 도출, 사업화 역량 강화, 수익화 전략 등을 도모하고자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(협약 이후)이며 선정사는 필수로 참여해야 합니다.
- 진흥원은 성과를 공유하여 B2B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성과교류회를 개최할 예정(최종보고서 등 실적 증빙 서류 제출 이후)이며 선정사는 필수로 참여해야 합니다.
- 본 사업의 결과물 일부(섬네일, 성과물 표지 등)는 진흥원 또는 진흥원과 제휴를 맺은 기관에서 활용·전시되거나, 각종 행사 등에 전시될 수 있습니다.
- 사업성과 관리를 위해 선정사는 본 사업 종료 후 진흥원 요청 시 운영 실적(매출 및 이용자 수 등)을 제출해야 합니다.
- 미래산업팀(063-219-2757, ebookbaro6@kpipe.or.kr)

2025. 7. 1.

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(직무대행)